

의안번호	제112호
회의연월일	2025. 9. 29. (제573회 회의)

심의  
의결  
사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령)

제출부서	경찰청 (경비국)
제출연월일	2025. 9. 15.

대테러위기관리과장, 작전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경찰 복제는 1980년 8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이후 품목·디자인 등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 경비업무 특성 및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제복·부속물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급여·대여 품목을 변경하며, 장구를 신설하는 등 개선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받을 수 있음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낸다.”를 “낼 것”으로 한다.

2.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신규 배치 시 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할 것  
제9조제1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통일해야 한다.”를 “통일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다”를 “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할 것”으로 한다.

1. 제복: 근무모, 근무복(하복, 동복), 기동복(하복, 동복), 임부복(하복, 동복), 점퍼(봄·가을, 겨울), 비옷 및 청원경찰화(단화, 외근화, 기동화, 방한화)
2. 장구: 외근허리띠, 경찰봉, 호신용경봉, 방패, 호신용조끼, 방검장갑, 포승(捕繩), 호루라기 및 그 밖에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여품 중 공격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장구로서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청원주가 종류·수량 등을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

3. 부속물: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장갑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표장, 휘장의 형태·규격 및 재질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것이다.  
나.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의 형태·규격 및 재질은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부속물은 사업장별로 통일하여 청원주가 결정할 것

③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근무모, 근무복, 청원경찰화, 경찰봉, 호신용경봉 및 호루라기를 착용하거나 휴대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않을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해야 한다.

④ 표장, 휘장 및 계급장 등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12에 따른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에 따르고, 대여품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과 협의를 거쳐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급여품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1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도 1부터 별도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별표 2]

청원경찰 급여품표(제12조 관련)

품 명	수 량	사 용 기 간
근무모	1	2년
근무복(하복)	1	1년
근무복(동복)	1	1년
기동복(하복)	1	3년
기동복(동복)	1	3년
봄·가을 점퍼	1	3년
겨울 점퍼	1	3년
단화 또는 외근화	1	1년
기동화	1	3년
비옷	1	3년
넥타이	1	2년
넥타이핀	1	3년
허리띠	1	3년
방한화	1	3년
장갑	1	3년
호루라기	1	5년
임부복(하복)	1	.
임부복(동복)	1	.

[별표 3]

청원경찰 대용품표(제12조 관련)

품 명	수 량
외근허리띠	1
경찰봉	1
호신용경봉	1
분사기	1
방패	1
호신용조끼	1
방검장갑	1
포승	1
가슴표장	1
감독자표장	1

[별표 5]

표 장

1. <모 자 표 장 >



가. 모자 표장은 금색 실로 수놓고 청원경찰 마크 하단 좌우에 방패를 감싸는 형식으로 '청원경찰'을 표기하며, 아래에는 일자형 사괘무늬를 붙인다.

2. <가슴 표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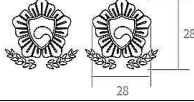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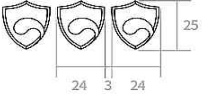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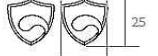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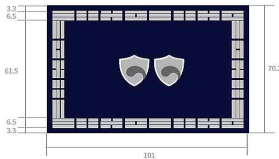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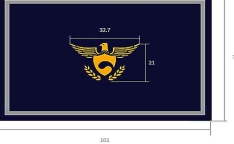
나. 원 6개를 다이아몬드(6각형) 형태로 나열하여 전체 형태를 만든다.

- 1) 중앙에 태극장 방패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태극무늬 1개와 월계수잎 20개(좌우 10개씩)를 배열한다.
- 2) 상단 진청색 바탕에 '청원경찰'을 한글로 표기하고 바로 아래에 'ACCREDITED POLICE'를 음각한다.
- 3) 색상 및 재질: 황동판에 크롬 도금




[별표 7]

**계급장**

1. <정 장>	
가. 대장	 <p>가. 중앙에 태극 방패장이 들어가고 하단에 무궁화 잎 20개(좌우 10개씩)가 배치된 무궁화 2개를 배열한다.</p>
나. 반장	 <p>나. 중앙에 태극 방패장이 들어가고 하단에 무궁화 잎 20개(좌우 10개씩)가 배치된 무궁화 1개를 배열한다.</p>
다. 소장	 <p>다. 중앙에 태극장이 들어간 방패 4개를 배열한다.</p>
라. 조원 (8년이상)	 <p>라. 중앙에 태극장이 들어간 방패 3개를 배열한다.</p>
마. 조원 (신임)	 <p>마. 중앙에 태극장이 들어간 방패 2개를 배열한다.</p>
바. 색상 및 재질: 황동판에 크롬 도금	
2. <약 장>	
	<p>가. 색상은 차콜색으로 하며 크기는 정장의 4분의 3으로 한다.</p> <p>나. 원단에 은색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을 고주파로 가공한다.</p> <p>다. 기동복에 다는 약장은 기동복과 같은 색상의 원단에 흰색 실로 수놓는다.</p>
3. <청원경찰장 어깨표장>	
	<p>가. 약장 크기 원단의 중앙에 청원경찰장(가로 32.3mm × 세로 24.7mm)을 결합한다.</p> <p>1) 색상 및 재질: 차콜색 원단에 황동판 금색 도금</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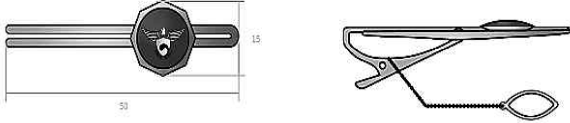
[별표 8]

**넥타이**

	<p>가. 넥타이에 "청원경찰 마크" 문양을 짜 넣는다.</p> <p>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넥타이를 근 무복에 착용한다.</p> <p>다. 그 밖의 색상·형태·규격·재질 등은 청원주가 결정한다.</p>
---	--

[별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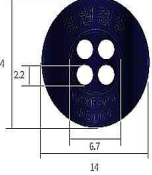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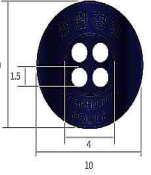
넥타이핀



가. 집게형으로 하되, 앞면에 청원경찰 마크 모양의 배지를 붙인다.  
 -남자 넥타이핀: 6.0cm  
 -여자 넥타이핀: 5.0cm  
 나. 색상 및 재질: 황동판에 로듐 도금

[별표 10]

단추

금속 단추	플라스틱 단추	
<p>&lt; 소형 &gt;</p> 	<p>&lt; 중형 &gt;</p> 	<p>&lt; 소형 &gt;</p> 
<p>가. 크기는 소형 1가지로 한다.                      1) 색상 및 재질: 은색 황동판 니켈 도금                      나. 모형은 반구형으로 하되, 첫 번째 원의 둘레에는 사슬 띠를 두르고, 그 안에 청원경찰 마크를 배치하며, 둘레 바깥 부분에 '청원경찰', 'ACCREDITED POLICE'를 새겨 넣는다.                      다. 뒷면의 중앙에 고리를 단다.                      라. 단추를 사용하는 제복은 다음과 같다.                      1) 겨울 근무복 상의 앞면 주머니(소)                      2) 여름 근무복 상의 앞면 주머니(소)                      3) 그 밖의 제복은 플라스틱 단추를 단다.</p>	<p>가. 크기는 중형(지름 14mm), 소형(지름 10mm) 2가지로 구분한다.                      나. 모양은 원형으로 하되, 앞면에 '청원경찰', 'ACCREDITED POLICE'를 음각한다.                      다. 그 밖의 형태·규격·재질 등은 청원주가 결정한다.</p>	

[별표 11]

허 리 띠



- 가. 버클의 앞면에 청원경찰 마크를 표시한다.
- 나. 허리띠: 가죽, 버클: 황동판
- 다. 그 밖의 형태·규격·재질 등은 청원주가 결정한다.

[별표 12]

부속물의 위치

1. < 근무복 >	
2. < 점퍼 및 기동복 >	
3. < 입부복 >	
4. < 비옷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 ----- -----.
1.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1. ----- ----- ----- ----- 지급할 것
2.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별표 2에 따른 정기 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 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한다.	2.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신규 배치 시 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할 것
3.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3. ----- ----- ----- ----- 낼 것
제9조(복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복제) ① ----- ----- -----.
1. 제복: 정모(正帽), 기동모(활동에 편한 모자를 말한다. 이	1. 제복: <u>근무모, 근무복(하복, 동복), 기동복(하복, 동복), 입</u>

하 같다), 근무복(하복, 동복), 한여름 옷,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부복(하복, 동복), 점퍼(봄·가을, 겨울), 비옷 및 청원경찰화(단화, 외근화, 기동화, 방한화)
2. 장구: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	2. 장구: <u>외근허리띠, 경찰봉, 호신용경봉, 방패, 호신용조끼, 방검장갑, 포승(捕繩), 호루라기 및 그 밖에 「경찰공무원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용품 중 공격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장구로서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청원주가 종류·수량 등을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u>
3. 부속물: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	3. 부속물: <u>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장갑</u>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형태·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제복의 형태·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1. ----- ----- ----- ----- 통일할 것

한다. 다만,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형태·규격은 별도 1과 같이 한다.

2. 장구의 형태·규격 및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3. 부속물의 형태·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모자표장의 형태·규격 및 재질은 별도 2와 같이 하되,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

나.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및 단추의 형태·규격 및 재질은 별도 3부터 별도 7까지와 같이 할 것.

③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단서 삭제>

2. ----- 할 것

3. ----- 할 것

가. 표장, 휘장의 형태·규격 및 재질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를 것

나.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및 허리띠의 형태·규격 및 재질은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부속물은 사업장별로 통일하여 청원주가 결정할 것

③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근무모, 근무복, 청원경찰화, 경찰찰봉, 호신용경봉 및 호루라기를 착용하거나 휴대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않을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해야 한다.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슴표장, 휘장 및 계급장을 달거나 부착할 위치는 별도 8과 같다.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와 같고, 대여품은 별표 3과 같다.

② (생략)

④ 표장, 휘장 및 계급장 등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12에 따른다.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에 따르고, 대여품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과 협의를 거쳐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급여품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위기관리과	
연 락 처	(02) 3150 - 1906